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76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김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변론 종결 2021. 1. 27.

판결 선고 2021. 2. 10.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523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2,036,158원 및 그 중 21,766,948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6,158원과 그 중 21,766,948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4. A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1,250,000원, 보증기한 2022. 1.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 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A는 2017. 2. 2. 이 사건 신용보증 하에 E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는 A가 2017. 11. 21.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8. 6.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게 21,766,948원(원금 21,250,000원 + 이자516,9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69,210원이다.

라. 한편 A는 2017.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A가 2017. 9. 12. 당시 그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준 것(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 혹은 원고의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증여 직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만약 이 사건 증여가 A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와 A의 공동적극재산이 피고에게 모두 귀속됨으로써 피고는 공동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원고가 '신용보증 부실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② A가 E은행에게 대출금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은 2017. 8. 20.이고, 이후 A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E은행이 원고에게 2017. 12. 27.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과 제1항의 기초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7. 9. 12. 당시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권 혹은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A가 이 사건 증여 직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난 2017. 11. 21.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3 2017. 12. 27. 원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보증사고 통지일인 2017. 12. 27. 무렵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8. 6. 21.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22,036,158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사전구상권혹은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A가 2017. 9. 10.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와 A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호협159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7. 12. 18.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실, 3 2018. 2. 8. 피고와 A 사이의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 합의

이 사건 아파트 실거래가 금액 : 대략 350,000,000원~370,000,000원(2017. 9. 10. 기준)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 : 180,000,000원(F은행,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토지담보 대출금액 : 100,000,000원(G조합, 채권최고액 : 130,000,000원)

기업은행 신용대출금액 : 20,000,000원

<합의내용>

- 실거래가 기준 대략 350,000,000원~370,000,000원(2017. 9. 10. 기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180,000,000원)을 피고가 상환 및 이자 납입을 한다.
- 토지 담보대출 금액(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한다.
- 토지 담보대출 금액(100,000,000원)을 상환한다.

- 기업은행 대출금액 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상환한다.
- 대출금액 및 이자를 제한 나머지 금액 대략 50,000,000원을 자녀(I)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한다.
- 이혼 후 매달 양육비 1,500,000원을 송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가 2018. 2. 8. 이혼하였고, 그에 관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A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8, 10,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A는 시가 369,000,000원¹⁾ 상당의 이 사건아파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F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8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0,000,000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G조합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100,000,000원,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21,250,000원 등 합계 401,25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산정

(1) 관련 법리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2017. 9.경 재산분할 합의 당시 공동재산 현황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6, 8호증, 제11 내지 17호증,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A의 2017.

9.경 공동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 : 시가 369,000,000원

② 서울 구로구 N아파트 O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2) : 시가 262,500,000원

③ 피고 소유의 세종시 Q 답 1,840㎡(이하 '세종시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M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유지나 증식에 A가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소극재산

① F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 180,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 100,000,000원

③ G조합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채무 : 100,000,000원3)

④ N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80,000,000원

⑤ N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피고가 M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중 미변제액 : 90,000,000원

⑥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1,250,000원의 경우, 피고가 A와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A가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것으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동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⑦ 피고가 주장하는 A의 M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경우 을나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현존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협의 이혼 신고시까지 재산분할 합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태 변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태 변화는 다음과 같으므로, 재산분할 합의 이후 협의 이혼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재산의 총액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동재산이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2017.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2018.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A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원리금으로 180,496,257원을 변제하는 한편, 2018. 4. 19. A의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으로 100,104,380원을 변제하고, A에게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97,203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25. N아파트를 28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N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80,000,000원을 변제하는 한편, 2018. 11. 13.경 그 매매대금으로 M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무 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공동재산 현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한 2017. 9.경의 적극재산의 시가와 이 사건 시가감정 당시 내지 현재의 시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피고와 A 사이에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2018. 2. 8.과 위 합의가 성립한 2017. 9. 10. 사이에 위 적극재산의 시가 변동에 대해서는 별달리 다투지않고 있고, 실제로 그 시가의 변동 폭이 크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1. 12. 16.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중인 A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2. 2. 15.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H일자 딸 I 을 출산하였다. A는 2007. 9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하였다.

② 피고와 A는 2003. 10. 10. 서울 구로구 J아파트 K호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2003.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7. 10월경 300,000,000원에 이를 처분하였고, A는 그 무렵 위 매도대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L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③ 피고는 아버지인 M으로부터 돈을 빌려 2007. 10. 3. N아파트를 154,5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A는 2008. 10. 16. 이 사건 아파트를 256,500,000원에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2008. 11.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피고 및 딸 I 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은 위 구로동 주공아파트 처분대금과 P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⑤ 피고는 2012. 5. 16. 아버지인 M으로부터 세종시 토지를 증여받고, 2012.5.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A부터 G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는 데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9. 근저당권자 G조합 앞으로 세종시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⑥ A는 2014. 8월경 주식회사 R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6. 10월경부터 'S'이라는 상호의 반찬 배달사업을 하였다. 앞선 제1항의 기초사실에 서 본 E은행 대출금은 위 사업을 하던 A가 대출과목을 '기타재정자금대출'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⑦ A는 혼인 초부터 잦은 술자리와 외박 등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히 함은 물론 자녀 양육에도 무관심하고, 재산 관리나 직장문제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2007. 12월경부터 1년 가량 별거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A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A는 2017. 2월경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7. 9.10.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2018. 2. 8. 협의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하였다.

⑧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2006. 1월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06. 11월경부터 2007. 9월경까지는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2010. 1월경부터 2018.8월경까지는 프리랜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의 소득금액은 2015년도 21,000,000원, 2016년도 43,000,000원, 2017년도 22,970,322원이다. 한편 피고는 A와 이혼 이후 딸 I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위 자녀의 양육은 거의 대부분 피고가 담당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아파트와 N아파트로 그 시가가 합계 631,5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369,000,000원 +N아파트 262,5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A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8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80,000,000원, M에 대한 대여금채무 90,000,000원으로 합계 65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와 A의 공동소극재산은 공동적극재산을 18,500,000원(= 650,000,000원 - 631,500,000원) 초과하고 있었다.

② 위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재산분할의 신청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채무가 분할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A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의 채무의 일부를 피고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래부터 위 공동소극재산 중 일부만을 A가 부담하였으면 족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가액에 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액수를 공제한 만큼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음으로써 약 369,0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가액은 69,000,000원(369,000,000원 - 30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④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와 N아파트의 취득경위, 그 매수자금의 원천, 피고들의 직업 및 수입활동,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피고들의 부담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정도, 피고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 이후 피고가 딸을 혼자서 양육하기로 한 점, A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A의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고, 이를 위하여 F은 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A의 채무는 대부분이 그 사업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혼 이후 미성년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얻은 실질 재산가액 69,000,000원 가량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피고와 A의 이혼 이후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피씨조 피씨스라브15층아파트

1층 459.28㎡

2층 452.88㎡

3층 452.88㎡

4층 452.88㎡

5층 452.88㎡

6층 452.88㎡

7층 452.88㎡

8층 452.88㎡

9층 452.88㎡

10층 452.88㎡

11층 452.88㎡

12층 452.88㎡

13층 452.88㎡

14층 452.88㎡

15층 452.88㎡

지층 418.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피.씨조 59.82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35950.2㎡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30057.7㎡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20805.3㎡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86813.2분의 34.2319

1)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6.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층여 당시 시가가 350,000,000원임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10호증에 기재된 2017. 9. 당시의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일단 시가를 산정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를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 M으로부터 154,000,000원을 빌려 N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A는 피고가 위 대여금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N아파트의 유지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N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하에서 피고의 M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 N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공동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피고는 위 1 내지 3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A의 혼인 생활중 주된 수입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A의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